

# 2021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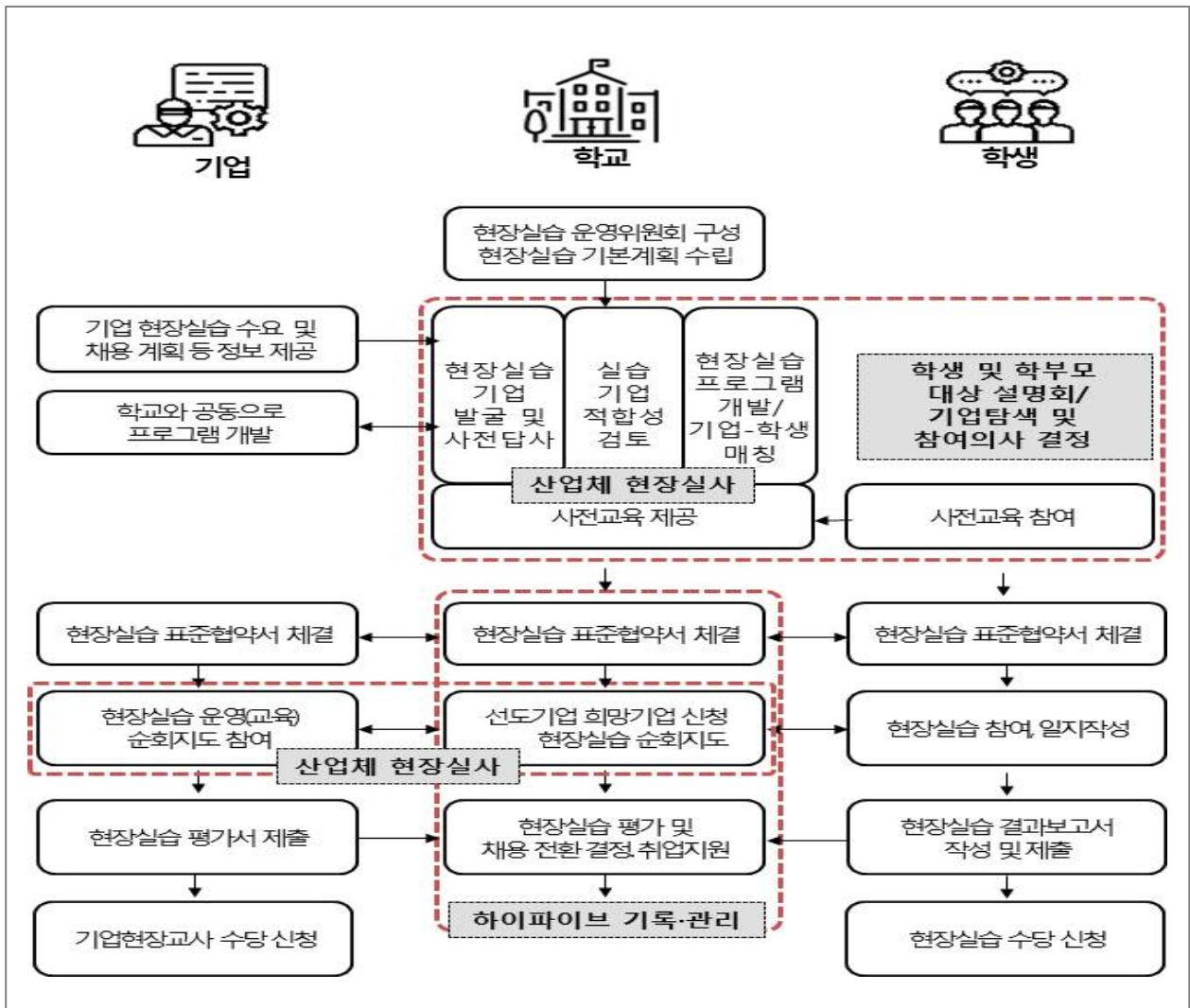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 직업교육담당

※ 2021년부터 ‘현장실습=산업체 직무교육’과 혼용하여 사용(교육부)

## I 목적

1.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지원
2.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산학협력 지원 기반 마련
3.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맞춤형 고졸 기능 인재 양성

## II 추진 절차



## I. 총 칙

1. **(성격)** 이 지침은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①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 ② 이 지침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하여 시행한다.
2. **(적용대상)** 이 지침은 특수목적(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에 적용한다.
3. **(현장실습의 목적과 정의)**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직무를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학교는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검토,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 등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5인~15인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원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학년부장, 교무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①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임기, 회의, 위원회의 책무 또는 의무사항, 관계부서 협조 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② 위원회는 학교 현장실습 계획 심의 및 추진사항을 확인·점검 및 산업계 및 대상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한다. 또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현장실습기업 적격 심사, 학생별 현장실습 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수 있다.

6. **(현장실습 예산 편성)**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추수 지도 관련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7.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Ⅱ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Ⅱ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 ② 현장실습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이수 단위를 결정한다.
- ③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보통교과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체육교과 제외)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8.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3학년에 한함) 등으로 구분하여 전 학년에 걸쳐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말한다.

### Ⅲ. 현장실습의 운영

9.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교내 활동 등 별도의 계획을 세워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10.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및 기간) 현장실습은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항에 따라 운영 시기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한다.

- ① 교내 활동 및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3학년에 실시하도록 하며, 운영 기간은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 이내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따른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등 정부 주도형 산학연계 사업,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주도형 산학연계 사업,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약정하여 인턴 기간을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한독상공회의소가 인정하는 아우스빌둥(Ausbildung) 참여기업에서의 현장실습

-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기업에서의 현장실습
  - 부서관 임관을 위하여 부서관학교에 10월 이후부터 입교하는 경우
  - 해기사 및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 별도의 자격 관련법에서 전문자격증 취득의 기본요건이 되는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전환학기를 운영하는 학점제 연구학교와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3개월 이상 운영 가능
  - 학교가 설정한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에서 학교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교내 프로그램을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간주하여 현장실습을 생략하고 협약된 선도기업으로 조기취업이 가능하다.

11. (현장실습기업의 선정)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건실한 기업을 발굴·선정한다.

- ①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현장실습기업을 발굴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선정·운영한다.
- ②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실습 제한산업체 해당 여부, 학생의 전공 분야 적합도,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 복지 여건, 산업체의 역량, 기존 현장실습생의 평가(또는 만족도) 결과 및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별첨)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3학년)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의 인정을 위해서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중 (별첨)의 ‘선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신청한다.
- ④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12.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현장실습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습 목표 및 실습생의 직무 수행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과목(또는 NCS 능력단위)을 활용한 산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별 산업체에 특화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3.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①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 전에 3자 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산업체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및 표준협약서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 법적 고려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산업체에 참여 학생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산업체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당을 시간당 최소 7,4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 ⑤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일지는 LMS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기업과 수행할 실습 내용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4. **(현장실습생 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② **(순회 지도)** 학교는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기업 대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하이파이브에 입력한다. 단, 방문 순회지도는 1회 이상 실시하고, 온라인 순회지도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한다. 순회지도 시 학생들의 실습상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현장실습생 및 기업현장교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권익 보호 조치)** 순회지도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제 실습이 협약 내용과 상이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 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전담노무사와 상의하여 실습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근로감독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순서는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 ④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생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현장실습기업의 책임자, 부모님,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현장실습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처리 방법, 사후 처리 및 후속 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우선으로 선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하고 지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15.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교육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현장실습 표준협약 준수 여부 등을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16. **(복교학생 지원)** 복교 의사가 있는 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복교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V. 현장실습의 종료 후 단계

17. **(평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학생 평가)** 학교는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또는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단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현장실습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평가)**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출석, 태도, 일지 등을 활용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평가한 내용을 현장실습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후 하이파이프에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학교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8. **(교육청의 결과 보고)**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와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토대로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채용 전환 후 추수 지도)** 채용전환되더라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는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과도한 노동이나 위험 직무에 전환배치되지 않도록 추수지도 하여야 한다.

**【별첨\_2021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_서식5】**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기업명: \_\_\_\_\_ 확인 일자: 20 . . . . 확인자: \_\_\_\_\_ (인)

※ 확인자는 현장실습 사전 실사 수행한 학교담당자 성명 및 서명 표기

1. 직무 분야 적합성 및 교육 여건

적절	부적절
----	-----

(1)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1주일 이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직무인가? (단순 반복 직무 제외) <sup>o</sup> <sup>X</sup>

· 선도기업 : 현장실습 운영기간 1개월 이상(20일 140시간 이상)

· 참여기업 : 현장실습 운영기간 1주일 이상(5일 35시간 이상)

※ 현장실습의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주유소, 편의점, 음식 배달 등) 및 인력파견업체 엄격히 제한

(2) 학교 교육과정상의 인력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가? <sup>o</sup> <sup>X</sup>

(3)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현장교사를 배정하여 참여 학생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sup>o</sup> <sup>X</sup>

▲ 참고자료 :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신청서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훈련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자격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기업의 실습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sup>o</sup> <sup>X</sup>

▲ 참고자료 : 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방문 점검 및 면담을 통한 시설 확인

2. 「근로기준법」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적절	부적절
----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전력이 없는 기업인가? <sup>o</sup> <sup>x</sup>  
 ▲ 참고자료 : 체불사업주 DB(www.moel.go.kr)

(2)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 <sup>o</sup> <sup>x</sup>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업종,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도덕상·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 고압, 잠수, 위해 화학약품 및 폭발물 취급 업무 등

(3)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sup>o</sup> <sup>x</sup>  
 ▲ 참고자료 : 하이파이브 지도·점검 결과

적절	부적절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재다발기업으로 공개된 전력이 없는가? <sup>o</sup> <sup>x</sup>  
 산재다발기업인 경우, 산재 발생 직무가 아닌 안전한 직무에 투입되는가?  
 ▲ 참고자료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고(www.moel.go.kr), 하이파이브

(5)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관련 직무 또는 교과(군) 특성을 고려해 점검)  
<sup>o</sup> <sup>x</sup>  
 ▲ 참고자료: 산업재해 예방계획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기관」 인정 확인, 무재해 운동 인증 서류 등(해당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업장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평가 결과 및 안전성 개선 등 종합 실태 점검

(6)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sup>o</sup> <sup>x</sup>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참고자료 : 현장실습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등 필요 시 공인노무사 협조를 통해 교육자료 확인

(7) 주당 35시간(주 5일, 1일 7시간 기준-휴게 시간 미포함) 실습, 야간 실습 및 <sup>o</sup> <sup>x</sup>  
 3교대 실습 직종 제외, 주당 2일 이상 휴일 확보가 교육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참고자료 : 현장실습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류

(제한기업 신청 사유)

3. 기업 규모 및 CEO 의지 (선도기업 기준)

적절	부적절
----	-----

(1) 기업규모 및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인가? (단, 다음의 관련 직무 <sup>o</sup> <sup>x</sup> 또는 교과(군)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 관련 직무 또는 교과(군) 특성에 따른 기준 인원: 경영·금융(5인), 보건·복지(5인), 디자인·콘텐츠(5인), 미용(5인), 레저·관광(5인), 음식·조리(5인), 정보통신(5인), 인쇄출판공예(5인), 농림(5인), 농기계(1인)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정 우수기업, 교육청의 실사를 통해 인정한 기업은 인원 수 제한 없이 지정 가능

(2) 기업의 복리 후생(기숙사, 출퇴근 버스, 중식 제공 등)을 일정 수준 이상 <sup>o</sup> <sup>x</sup> 제공하는가?

(3) 기업 CEO의 현장실습 참여 의지(현장실습에 대한 이해, 실습 종료 후 채용의지 등)와 <sup>o</sup> <sup>x</sup> 일반적인 근로조건(장기근속,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 임금, 복지혜택 등)은 양호한가?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융 기관(제1,2금융권), 대기업, 중견기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아우스빌동 참여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WPL 농가, 한국마사회 지정 우수 승마장, 보건복지부 인증평가를 거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월 이후 소집하는 군 부사관은 별도 심사 없이 선도기업으로 인정

☞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 현장실습이 단순 반복 직무가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습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함. 다만, 선도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 산학 맞춤형) 또는 산업체와 협업하여 취업 약정을 통한 사전 직무교육을 산업계 주도로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선도기업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특정 교육청이 인정한 선도기업은 다른 교육청이 상호 인정 가능함.

런 법령을 근거로 교육청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21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기타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교육청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